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19건의 개선·통보 및 현지 조치

구분	합계			변상명령(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요청	현지조치(금액)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인사자료(인원)	비위(인원)	시정완료(금액)	모범			
합계	19						3	2		8							6
부의	19						3	2		8							6
위임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조치기관	제 목	처분요구 종류
1	해양오염예방과	해양오염 단속 지도점검 서식(시인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통 보
2	장비관리과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정비창 외자기관 부속 전담부서 신설 필요	통 보
3	장비관리과	함정 예방정비 표준화 관리 미흡	통 보
4	장비관리과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정수표 관리 미흡	통 보
5	중부지방청 (기획운영과) (경비과)	공기부양정 및 격납고 관리 · 운영 소홀	통 보
6	중부지방청 (기획운영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부기관단지 출입보안 등 대책 마련 필요	통 보
7	중부지방청 (수사과)	수사첩보(범죄첩보) 처리 미흡	주 의
8	중부지방청 (특공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야외사격장 화재 예방 · 관리 소홀	주 의
9	인천해경서 (해양안전과)	다중이용선박 유선 관리 부적정	주 의
10	운영지원과 정보통신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세부 진단기준 마련 필요	개 선

2. 주요 지적사항 : 10건

(1) 해양오염 단속 지도점검 서식(시인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 및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에 감시원은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시설 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위법사항 등 조치) ①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

⑥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한다.

- 시인서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고,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

□ 문제점

○ 중부지방청 등 5개 지방청(소속서 포함)의 해양오염 지도점검 서식(시인서) 작성·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서장 관인 날인 여부, 관서명 기입 여부, 미사용 시인서 파기 방법 등 관서별 시인서 작성·관리 방법이 상이하며, 특히 ㉮해경서, ㉯해경서의 경우 일련번호가 미부여된 시인서를 사용하는 등 관리상 문제 발생

□ 조치사항

○ 해양오염방제국장(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적발용 서식 시인서가 관서별로 일관성 있게 작성·관리되어 행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해양경찰정비창 외자기관 부속 전담부서 신설 필요

□ 판단기준

○ 해경청은 해양사고의 수난 구조·예방·지원 등을 위해 전국 21개 소속기관에 경비함정(×××척)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비함정 계획 정비를 위해 해양경찰정비창을 운영

○ 정비창은 함정정비를 목적으로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및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함정 톤수별 정비(수리)종류에 따라 제작사 등의 지침기준에 맞추어 정비 업무를 수행 중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9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제9조(정비기준)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0조(정비계획)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는 함정의 주기관 운전시간과 해상경비 소요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제38조(수리자재 확보계획)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 입창계획에 따라 함정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수리자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정비창 보급관리단 구매계에서는 경비함정 수리에 필요한 기관 부속품을 내·외자 구분 없이 담당자 2명이 전담하여 함정 계획 정비에 소요되는 외자부속품 구매계획을 진행하면서 인력, 예산, 공급망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전확보에 애로사항 발생

○ 외자부속의 구매요청일로부터 납품까지 최대 270일 소요, 실제 납품 후 수리 완료까지 수리기간이 최소 11일부터 최대 165일 장기간 소요, 수리기간 연장 사례가 발생

○ 특히, 이번 중부지방청 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해경서 소속 공기부양정(H-××호)의 경우 예비 프로펠러 미확보 상태에서 총 분해 수리를 진행하여 상당 기간(×××일) 소요

○ 또한, 제주지방청 ㉮해경서 소속 ××××함의 경우 '××. ×. ××. 정기 출동중 좌현 스턴튜브 패킹 스피링 절손으로 현재까지 부속이 확보되지 않아 수개월째 운항불가 상태인 것으로 파악

○ 이와 같이 외자부속품의 사전확보는 경비함정 수리지연 및 그에 따른 장기간의 경비공백을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해양사고 대응 및 경비함정 수리 업무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외자부속품을 전담하여 계획적으로 구매·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 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

□ **조치사항**

○ 장비기술국장(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경비함정 수리를 위해 외자기관 부속 전담부서가 신설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외자기관부속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경청 관련 기능과 적극 협의 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함정 예방정비 표준화 관리 미흡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 등에 경비함정 장비에 대해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방점검 등 장비관리 실태를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정의) 11. "예방정비"란 예방정비시스템(Planned Maintenance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써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제11조(집행절차) 3. 예방정비

가. 함(정)장은 PMS 등재된 함정 장비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나. PMS 시행여부에 대해 부서장, 연안구조정 담당자는 1차 책임을 지며 함(정)장, 파출소장은 2차 책임자이다.

□ 문제점

○ 2023년 해경청 주관 예방정비카드 현행화 계획에 따라 함정별 예방정비카드를 수정 한 결과, '25년 계획건수 기준 동일 톤급임에도 장비 등록 대수 및 예방정비 이행 항목 편차 발생

- 특히,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예방점검*과 명칭이 유사하여 함정 근무자 혼돈 발생 및 관리 부재

* 예방정비 항목 중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함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를 예방점검으로 분류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나, 현재 본청 장비관리과에 "표준 매뉴얼" 업무 담당자 부재

○ 2024년 주요업무계획 예방정비 관련 보완 사항 중 "함정운용에 필수적인 주요장비 선정 후 예방정비 항목 표준화 지속추진을 위한 본청+지방청 예방정비 TF 구성" 미조치

□ 조치사항

○ 장비기술국장(장비관리과장)은 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시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함정별 정비대상 장비 현행화 및 동일한 장비의 예방정비 항목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정수표 관리 미흡

□ 판단기준

○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해경서 및 지방청장은 매년 지도점검 후 결과를 본청 통보, 정수물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개정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정수물품의 관리) ②운용부서의 정수물품은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정수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실태의 지도점검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경비(안전)과장]: 연 1회(하반기)
2.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장비운영관리팀장)]: 반기 1회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팀장]: 연 1회(하반기)

□ 문제점

○ 정수관리 대상인 주요물품과 그 밖에 물품에 대해 정수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비품이 아닌 소모품 ×,×××종을 지정 운용

- 「물품관리업무 매뉴얼」('24. 6.) 제5장 제6절에 따라 소모품 등의 재고관리는 재고관리기준(운용수준과 안전수준을 합산)에 따라 따로 책정하도록 규정

○ 정수물품 위원회 시 각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하고 심의·의결 하여야 하나 정수표로 관리하는 정수물품에 대해 이를 누락

○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정수표에 함정, 파출소, 구조대, 특공대, 항공대, 중특단, 수사과, 해양오염방제과 등 현장부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함정으로 분류된 ㈜원 ××함 및 ㈜창 ××정은 누락

□ 조치사항

○ 장비기술국장(장비관리과장)은 정수물품 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정수표를 법령 등에 따라 개선하고 정수표로 관리하는 소모품에 대하여 별도의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공기부양정 및 격납고 관리·운영 소홀

□ 판단기준

○ 인천해경서 소속 공기부양정은 갯벌 고립 및 영종도 공항 인근 여객기 추락 등 해양사고에 대응하며, 수난구조·예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서해5도 도서주민 안전 호송과 복구물자 이송을 지원하는 등 해양경비활동 임무를 수행 중

○ 공기부양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5년 7월 △△시 △△구 △△도에 총공사비 126억원 예산투입 공기부양정 지원시설을 조성하였고, 해당시설에는 출·입항 슬립웨이, 승조원 사무실, 자체정비 및 보관 할 수 있는 격납고 등을 신축

국유재산법 제66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9조 및 제52조, 해양경찰 함정정비규칙 제10조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중앙관서의 장 등은 소속기관 국유재산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하고 결과 및 관리상태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49조(운용지침), 제52조(교육훈련) 공기부양정은 매월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한 조함 및 수로숙달, 인명구조 및 도서민 후송, 등 임무수행을 위해 주기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정비계획) 함정의 주기관 운전시간과 해상경비 소요 및 예산 등을 감안, 다음 연도 정비계획수립

□ 문제점

○ 공기부양정 기지(격납고)는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 수리에만 의존해 온 것으로 확인

○ 공기부양정 기지(격납고) 시설 보수에 대한 부서 간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장비 관리·수리에 필요한 필수예산에 대해 중·장기적 사전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공기부양정의 주요 필수부품인 프로펠러 및 아웃루프가 제작사 권장 교체 주기 및 사용 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에도 예비 부속 확보 및 적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수리 지연, 장비 운용 불가, 기본 성능 저하 발생

○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필수부품에 대한 선제적 예비부속 확보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프로펠러 등 표준 정비지침(매뉴얼) 부재로 장비관리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기부양정 운영 전반의 안전성과 대응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

□ 조치사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기획운영과장)은 공기부양정 운영시설(격납고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부서)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용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경비과장)은 공기부양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비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프로펠러 등 주요 부속에 대한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부기관단지 출입보안 등 대책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정부청사 관리규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31380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412호) 근거로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시행

□ 문제점

○ △△광역시 △△도 소재 정부기관단지에는 중부지방청(㉮대, ㉯대, ㉰VTS), 인천해경서(㉱기지) 및 他기관(㉮㉮청, ㉯㉯본부) 3개 기관과 함께 사용 중에 있으나,

- 출입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시설, 도난・화재・무단침입에 대한 사태별 대응 요령 등 출입보안에 관한 기준 및 단지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음

- 정부기관단지 인근 ㉰㉰본부, ㉱㉱원, ㉲㉲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는 출입보안 시설 有

- 최근 정부세종청사 외부 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사 출입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

○ 따라서 정부기관단지는 단순 공공건물이 아닌 무기고·탄약고·화약고·유류고 등 폭발성 위험물 시설을 갖추고 있고, 격납고에 회전익 항공기·공기부양정이 항시 운행 대기 중에 있으므로 민간 시설과는 다른 엄격한 출입보안 대책이 요구

□ **조치사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기획운영과장)은 정부기관단지 도난·화재·무단침입 등 청사 출입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7) 수사첩보(범죄첩보) 처리 미흡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

「(해양경찰청)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수사첩보 처리) ②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신속한 배당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수사경찰은 제2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해야 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수사경찰은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범죄첩보 미착수 검토서)를 자체 보관

□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방청 및 소속서 수사첩보(범죄첩보) 수집 및 처리 실태점검 결과 통보자료 이상 범죄첩보 수집은 총 ×××건이고, 이중 입건전조사 착수 ××건, 미착수 ×××건으로 확인

○ 또한, 입건전조사 미착수 ×××건 중 소명자료(범죄첩보 미착수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결한 건은 ××건(××%)이며, 그 결과 통보자료 이상의 수사첩보로써 조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 절차 없이 자체 종결

□ 조치사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수사첩보(범죄첩보) 처리 절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야외사격장 화재 예방·관리 소홀

□ 판단기준

○ 공사 감독자 또는 검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에 따라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문제점**

○ 중부지방청 특공대에서는 야외사격장 경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 사격장 환경개선, 사격장 안전을 위해 준불연 야자매트 등을 시공하도록 계약하였으나

- 2024. 5. 2. 준공검사 시 시공된 야자매트가 준불연 소재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하지 않고, 관능검사 후 합격 처리

○ 그 결과, 1년이 경과 한 2025. 4. 30. 13:00경 A 등 8명이 야외 소총 사격훈련 중 야자매트에 불꽃이 튀며 화재 발생(야자매트 부분 전소)

- 소화기(약 20개), 소화수 등을 이용하여 ㉮대에서 자체 진화, 강풍으로 인해 잔불이 진화되지 않아 119에 화재 신고하여 소방차를 동원해 잔불을 진화하는 등 화재 발생 원인 제공

□ **조치사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 다중이용선박 유선 관리 부적정

□ **판단기준**

○ 유·도선의 면허는 사업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운영하여야 하며, 선령초과 유·도선은 선령연장[1]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반드시 받고 운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1조(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해경서장)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선박의 재질이 FRP이고 20년이 초과한 유·도선의 경우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선박검사 기관인 해상교통안전공단에 의뢰 선령연장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질이 강선이고 25년을 초과한 유·도선의 경우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선령연장검사와 선박관리평가(해경서장)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지방청 ㉯해경서 관내 일부 유선들이 선령 기준일 전에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동안 ×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그로 인해 ㉯해경서 관내 유선 ㉮㉮호는 선박관리평가 기간 종료일(2025. 10. 21.)부터 감사자료 요구일(2025. 11. 27.)까지 ××회 출항한 사실이 있고, ㉯㉯호는 종료일로부터 ××회, ㉰㉰호는 ×××회 각각 출항, 영업한 사실이 확인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선령의 연장기준
- 선령이 20년 초과 25년 이하인 유선 또는 도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이하 "선박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관청이 검사를 의뢰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유선 또는 도선(목선인 유선 또는 도선 및 합성수지선인 유선 또는 도선은 제외한다):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선박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 조치사항

○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선령연장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대상 유·도선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0)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세부 진단기준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해경청 소속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및 비밀 재분류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5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5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 각 기관의 장은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해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과 보안 취약점 등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문제점

○ **(정보보안 분야)** ①“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 PC를 제외한 정보통신망(내·외부망, 위성통신망, VPN 등)과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미실시 및 연간 계획 미수립, ②“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결과에 대한 기록물 관리 일부 관서(㉮지방청 등 4개 관서) 미이행 및 기록물 관리 방법 상이(메모보고, 문서등록대장)

○ **(일반보안 분야)** ①“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일부 관서(㉮지방청 등 14개 관서) 보안진단 미실시, ②“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이행 관서 진단 방법 상이

□ **조치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보안감사 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규칙 취지에 맞도록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비밀 재분류 등이 매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장비기술국장(정보통신과장)은 보안감사 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규칙 취지에 맞도록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취약 점검 등이 매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